

(20 년도)주택도시기금 등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재매입권리부여 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3쪽 중 제1쪽)

1. 신고인

납세 의무자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세무 대리인	성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관리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2. 주택도시기금 등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재매입권리부여 주택 명세

번호	① 신고 구분	② 소재지	③ 부동산 고유번호	④ 납세의무자 구분	⑤ 매입일 (취득일)	⑥ 매입일 현재		
						공시가격	거주자(매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1				[] 토지주택공사리츠 [] 자산관리공사리츠				
2				[] 토지주택공사리츠 [] 자산관리공사리츠				
3				[] 토지주택공사리츠 [] 자산관리공사리츠				
4				[] 토지주택공사리츠 [] 자산관리공사리츠				
5				[] 토지주택공사리츠 [] 자산관리공사리츠				

3. 점검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에 √ 표를 합니다.

1. 토지주택공사리츠 또는 자산관리공사리츠가 매입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
2. 매입 시점에 거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외에 거주자가 속한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
3. 해당 거주자에게 매입한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에 그 주택을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합니다.	[]
4. 매입 당시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9호에 따른 위
주택도시기금 등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재매입권리부여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변동)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9호의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1. 관리번호란: 「세무사법」 제6조 또는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 시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관리번호를 적지 않고 생년월일란에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2. 생년월일란: 관리번호가 없는 경우에만 세무대리인(세무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이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고·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세무사 등)의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3. ① 신고구분: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이미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합산배제 신고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지난 연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삭제"를, 지난 연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중 변경사항이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정정"을, 변경사항이 없는 주택의 경우에는 "기신고"를 적습니다.
4. ②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동·호수 포함)를 적습니다.
5. ③ 부동산고유번호: 주택의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규칙」 제12조에 따른 부동산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부동산고유번호가 없는 경우로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경우에는 "무허가"로 적고,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등기 전"으로 적습니다.

※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고유번호 14자리 숫자(0000-0000-000000)를 말하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간편검색"을 통해 주택의 소재지를 검색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6. ④ 납세의무자 구분

가. 토지주택공사리츠: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나. 자산관리공사리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7. ⑤ 매입일(취득일):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취득일을 적습니다.

8. ⑥ 매입일 현재: 매입 당시를 기준으로 공시가격, 거주자(매도인)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공시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공시되지 않은 경우 개별주택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시되지 않은 경우 공동주택가격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적습니다.

(3쪽 중 제3쪽)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